

[별표 8]<개정 1986.11.11>

보건진단기관의 기준(제57조 관련)

1. 인력기준

- 가.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
- 나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·화공학·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1인 이상
- 다.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인 자 1인 이상

2. 시설기준

- 가.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
- 나. 화학실험실

3. 기계·기구기준

- 가. 분진, 특정화학물질, 유기용제등의 시료채취기
- 나. 소음측정기
- 다. 분진측정기
- 라. 기온·기습·기류·복사열·조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
- 마. 광전분광광도계 또는 광원광도계
- 바. 검지관방식에 의한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측정기
- 사. 화학천평 또는 직시천평
- 아. 건조기
- 자. 순수제조장치
- 차. 산소농도측정기
- 카. 현미경
- 타. 일산화탄소측정기
- 파. 피토티튜브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